

## 귀하의 권리를 알아야 합니다! 형사 사법 시스템 관련 전력이 있는 경우 뉴욕시 주정부 지원 주택 신청하기

뉴욕시에 위치한 주정부 지원 주택 신청자에게 형사 사법 시스템 관련 이력이 있는 경우, 귀하는 특정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여기에서 주정부 지원 주택에 대한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for State-Funded Housing)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cr.ny.gov/info-justice-involvement>

*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기 전에*, 임대인/소유주는 해당 사실을 귀하에게 알려야 하며(주택 신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귀하의 일반적인 자격(즉, 프로그램 및 임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임대인/소유주는 범죄 경력 조회 및/또는 새로운 정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가 확인됨에 따라 유닛을 제공해야 합니다.

임대인/소유주가 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는 경우, 범죄 경력을 보여주는 출력물 사본을 귀하에게 보내야 하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원봉사나 고용 등 사회 복귀의 증거, 재할, 고용주 또는 성직자가 쓴 편지, 보고서의 오류에 대한 증거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추가 안내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임대인/소유주는 형사 사법 시스템 관련 이력을 근거로 신청자를 거부하기 전에 개인 맞춤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개인 맞춤 평가에서는 검토 가능한 모든 유죄 판결에 더하여 귀하가 적시에 제출한 모든 추가 정보를 고려합니다.

임대인/소유주는 특정 유죄 판결만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류 중인 체포는 고려할 수 없음) 이러한 유죄 판결에는 다음이 해당합니다:

1. 유닛 신청이 검토되기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경범죄 유죄 판결,
2. 유닛 신청이 검토되기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중범죄 유죄 판결,
3.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신청자가 유닛 신청 심사로부터 1년 이내에 석방되었을 경우, 그리고
4. 뉴욕 성범죄 등록부, 연방 성범죄 등록부 또는 성범죄자 등록이 의무인 다른 관할권의 등록부에 등록된 모든 유죄 판결.

임대인/소유주는 신청서를 검토할 때 이러한 사항은 고려할 수 없습니다.

1. 계류 중인 모든 체포(기각을 고려한 연기(ACOD) 중인 체포 포함),
2. 귀하에게 유리하게 종결된 이전의 체포 또는 형사 고발,
3. 청소년범 판결,
4. 만 18세가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한 유죄 판결,
5. 봉인 처리되었거나, 사면으로 면제되었거나, 항소심에서 뒤집혔거나, 취소되었거나, 행정 사면의 대상이 되었거나, 기타 방법으로 말소, 파기 또는 법적으로 무효가 된 유죄 판결,
6. 장애 구제 증명서(certificate of relief from disabilities)의 대상이 되는 유죄 판결,
7. 다른 관할권에서 (1)-(6)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이에 상응하는 유죄 판결,
8.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계류 중인 모든 체포 기록,
9. 신체적 폭력이나 인명 또는 재산에 대한 위협을 수반하지 않았거나 타인의 건강, 안전 및 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유죄 판결. 그리고
10. 다른 주 또는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유죄 판결 중, 해당 행위가 뉴욕시에서 발생했다면 합법적이었을 것으로서 다음이 포함됨: (a) 뉴욕시 행정법 섹션 10-184.1에 정의된 생식 또는 성 확인 치료를 요청, 획득, 제공 또는 조장한 경우, (b) 뉴욕주 형사소송법 섹션 570.17에 정의된 "법적으로 보호되는 건강 활동"에 관여한 경우, (c) 뉴욕주에서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대마초를 소지한 경우.

임대인/소유주는 귀하가 적시에 제출한 범죄 경력 정보의 오류를 밝히는 자료와, 재할 및 모범적 행동에 대한 증거를 포함하여 귀하의 신청을 뒷받침하는 보충 또는 정상 참작 정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재할 및

모범적 행동에 대한 증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약물 또는 알코올 재활 프로그램 참여,
2. 기타 유형의 재활 프로그램 참여 및 수료,
3. 수감 기간 동안의 모범 행동 증명서 또는 기타 모범 행동에 대한 문서,
4.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또는 석방 후 구직 활동을 하고 일자리를 유지하였음,
5. 성실한 임차 이력 (참고: 이전 집주인이나 주택 제공자로부터 받은 긍정적인 추천서를 제공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없음),
6. 취업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냈다는 증거 (지역사회 참여나 자원봉사 활동 등의 사례를 포함하세요),
7. 커뮤니티 구성원의 추천서,
8. 범죄가 발생한 상황과 그 이후의 경과를 설명하는 서술 또는 정보로, 유죄 판결의 심각성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
9. 재활을 위한 귀하의 노력 및 관련된 생활 방식에 대해 알려주는 기타 요인, 및
10. 소유자/관리 대리인이 입수한 형사 사법 시스템 기록의 오류에 대한 증거.

귀하가 형사 사법 시스템 이력으로 인해 거부된 경우, 다음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1)** 뉴욕시 내 주정부 지원 주택 신청자의 형사 사법 시스템 이력을 평가하기 위한 **NYSHCR** 워크시트의 완전한 작성본 및 유죄 판결이 임대인/소유주의 정당한 사업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귀하가 제공한 추가 정보가 해당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었거나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서면 설명, **(2)** 검토된 정보의 사본, **(3)**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10일**의 영업일, 및 **(4)** [NYC's Fair Chance Housing Notice \(공정 기회 주택 고지문\)](#).

임대인/소유주가 신청서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부당하게 주택을 거부했다고 생각되면, 뉴욕주 Homes and Community Renewal (주택 및 지역사회 재건부)의 Fair and Equitable Housing Office (공정 및 공평 주택 사무소) [feho@hcr.ny.gov](mailto:feho@hcr.ny.gov)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hcr.ny.gov/marketing-plans-policies#credit-and-justice-involvement--assessment-policies>